#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

(황동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2018-75 발의연월일: 2018년 11월 일

발 의 자: 황동현, 김성한, 송영섭, 이종숙

최동철, 박성호, 박주선, 송순효

이충현, 윤유선, 김현희

##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# 2. 제안이유

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또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 에 입각한 우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- 나.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사업의 적용범위 규정(안 제3조)
- 다.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와 설치장소,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5조 ~ 안 제9조)
- 마.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 (2018. 11. 2. ~ 11. 7.) : "의견 없음"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보조금"이란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(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 함한다)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- 2. "보조금지원 표지판"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①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(이하 "보조사업자" 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②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·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 제4조(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) ①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,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.
- ②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 - 1. 보조금 지워기관
  - 2.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
- 제5조(공사표지판의 설치)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 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시설표지판의 설치) 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 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.
- 제7조(운영표지판의 설치)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·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제8조(표지판의 설치장소 등) ①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 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②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.

- ③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9조(비용부담)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.
- 제10조(관리감독 및 평가)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 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,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 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)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 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.

# 붙임

관계법령

## 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**제16조(교부조건)**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